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서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이하 협약당사자)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 및 부채해소 등 금융과 복지가 연계된 협력사업 체계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당사자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협약당사자 협력분야)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본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복지 분야의 행정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는 본사업의 대상자 관리와 각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상호분담 할 수 있다.
3. 본사업은 보건복지부 수행지침에 의해 이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는 수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체 내규와 규정에 따른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는 시범사업 지역의 해당 광역·지역 수행기관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상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비밀유지) 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 신상 및 상담자료 등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취급하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제4조(비밀유지) 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 신상 및 상담자료 등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취급하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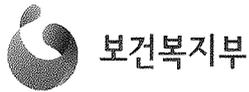
제5조(신의성실) 협약당사자 간의 구체적 역할분담은 실무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등)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시작되며, 협약당사자간에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약의 중단) 이 협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며, 제4조에 명시한 비밀유지에 관한 의무는 본 협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문형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임종룡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

홍영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윤영

김윤영



중앙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원장

심성지

심성지